

의안번호	제 140 호
의 결	1997. 2. 28.
년 월 일	(제 60 회)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보은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7. / . 24.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140
번 호	

제 출 년 월 일 : 1997. / . 24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 제 안 이 유

- '96. 8. 8일 법률 제 5153호로 정부조직법개정과 1995. 12. 30 농림수산부령 제 1220호에 의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쇄 및 체치능력에 따라 대규모 및 소규모제분업으로 구분되어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등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 1995. 12. 30일 농림수산부령 제1,220호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력의 마력수에 관계없이 체치능력에 따라 대규모, 소규모로 구분토록 되어 있어 종전의 규모이하 제분업신고등에관한 조례가 불요하므로 폐지함

☐ 의 안 전 문 : 따로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 24조

- 제안자 의견 :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 현행 24조로 부합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규모 이하제분업 신고등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하오니 폐지조례(안)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보은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4編 農 業 第3章 糧政 糧穀管理法

1. 糧穀의 원활한 流通과 消費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糧穀을 販賣하는 경우
2. 農林部令으로 정하는 規格으로 포장된 糧穀을 販賣하는 경우
3. 農民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が 生産한 糧穀을 消費者에게 직접 販賣하는 경우

第19條 (糧穀加工業의 登錄) ①糧穀을 原料로 하여 加工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は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6·8·8>

③糧穀加工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讓渡·賃貸 또는 변경하거나 營業을 廢止 또는 休業한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 (糧穀賣買業者등에 대한 命令) ①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과 流通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賣買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糧穀生産者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8·8>

1. 販賣價格의 告示
2. 去來包裝規格의 制限
3. 包裝糧穀에 대한 生産年度·重量 및 商標의 표시

②農林部長官은 糧穀의 加工方法改善, 加工生産品の 品質保障 및 원활한 流通, 加工過程에서 발생하는 糧穀의 減耗防止와 糧穀의 消費節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主務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糧穀加工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8·8>

1. 加工施設의 개선
2. 加工收率·加工方法 및 加工生産品の 規格制限
3. 流通糧穀의 再搗精禁止
4. 包裝規格·包裝資材 및 포장방법의 制限
5. 加工生産品에 대한 標識의 添付

第21條 (營業停止등) ①市·道知事は 糧穀加工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6月이내의 범위안에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을 停止하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로 主務官廳이 있을 때에는 당해 主務官廳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6·8·8>

第24編—農—業— 第3章—糧政—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2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제2조의3제2호·제3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3조 (포장양곡의 규격)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판매할 수 있는 포장양곡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물사용검사필증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을 검사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과 합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갑종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第24編 農 業 第3章 糧政 양곡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신고없이 판매할 수 있는 포장양곡 규격(제3조관련)

1. 포장중량 : 양곡별 5kg이하

〈별표 1 제1호 개정 95·12·30, 시행일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별표 1의 제1호중 "5kg이하"를 "20kg이하"로 한다.

2. 포장겉면의 의무표시 사항

- 산 지
- 생산연도(원료곡의 연산)
- 중 량
- 생산자(가공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 혼합비율(혼합미, 기타 혼합곡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개정 95·12·30>

갑종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관련)

1. 소규모 도정업

구 분	시 설 기 준
정 미	○동력 : 정미기·제현장치·고르는 장치 및 기타 부대시설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마력이상 ○정미기 일관 생산이 가능한 시설 ○제현장치·고르는 장치(원료·제품) : 정미기 생산능력에 알맞는 능력이 있는 시설
정 맥	○동력 : 정맥기·고르는 장치 및 기타 부대시설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마력이상 ○정맥기 일관생산이 가능한 시설 ○고르는 장치(원료·제품) : 정맥기 생산능력에 알맞는 능력이 있는 시설

비 고 : 1. 소규모 도정업은 업종별로 구분등록 가능하며, 정미·정맥 도정업을 같이하는 경우 동력과 고르는 장치는 정미용 또는 정맥용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겸용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별 사정을 감안하여 이 시설기준을 하한으로 하여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신규등록 도정시설 확인 및 생산능력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위 시설기준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